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사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규정〉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2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사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규정	3
참고자료 1. 제21대국회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현황	10
참고자료 2. 비용추계 결과(곽규택의원안)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6. 13.
3. 회 부 일 : 2024. 6.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글로벌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여 해양 관련 계약 분쟁 심판을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는 등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특히,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국내 해양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적해 있는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외적으로 동북아의 항만 허브 부산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광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해사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해사법원의 설치를 전제(연계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광규택의원 대표발의)」)로, [별표 1]을 개정하여 해사법원의 설치와 소재지를 반영하고, [별표 11]을 신설하여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해사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이며, 관할구역은 전국이고,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사법원 설치
[별표 11] 해사법원의 관할구역	· 해사법원 관할구역 규정

<신설되는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구분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각규택의원안	해사법원	부산광역시	전국	2025년 1월 1일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u>특허법원</u>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 <u>특허법원</u> , <u>해사법원</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관할구역) ----- ----- -----. ----- ----- -----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 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 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 역을 제외한다.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u>해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u>
	<u>11</u>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 및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5개 법원에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해사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으나, 중국 등과 달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아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해사법원의 설치를 전제로 해사법원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 및 그 구체적인 설치 형태에 관한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일 해사법원을 부산광역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단일한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사건 관할을 집중하여 전문법원의 체계적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부산광역시는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 기준 세계 7위(2020년), 국내 1위(전국의 75.0% 처리, 2020년)의 항만도시¹⁾이고, 해양 관련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종합금융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이 모여 있어 전문인력 확보 및 해사법률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며, 국가균형발전이나 해양산업과의 연계성 측면 등에서도 장점을 지님²⁾.

1)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용역」, 부산광역시(2022), pp. 10~15

2) 이재찬,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1), pp. 97~103

- 한편, 이에 대해서는 사건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소송당사자들의 사법접근성 확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³⁾.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70억 4,200만원(연평균 34억 800만원)으로 추정됨. 이는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해사법원에 현재 5개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해사전담재판부의 판사(24명)를 재배치하고, 판사 수 대비 공무원 수 비율을 고려하여 2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임(참고자료 2. 비용추계 결과 참조).

3) 이재찬,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1), pp. 91~93

다. 관계기관 의견

- 법무부는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해사법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종사자의 주요 소재지 및 사건관계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 소재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의 경우 해사법원이 전국을 관할하여 타 지역 사건 관계인 등의 사법 접근성 저하가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법원행정처는 2020. 9. 제8차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대법원장)에서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고, 법원행정처에서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도록 주문한 바 있어,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임.

다만, 해사법원의 구체적 설치형태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전문법원의 체계적 전문화 및 법관의 전문성 역량 확보를 위한 사건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소송당사자들의 소송 편의와 법원 접근성 문제를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은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일한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21년 발간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에서는 해사사건의

수, 해사사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할의 집중 필요성과 소송당사자들의 소송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사법원을 2곳에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설치 지역으로 부산, 서울, 인천(가나다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1

제21대국회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현황

연번	개정안	개정내용															
1	윤상현의원 <인천 동구미추홀을> [2100097]	<table border="1"> <tr> <th>명칭</th><th>소재지</th><th>관할구역</th></tr> <tr> <td>해사법원</td><td>인천광역시</td><td>전국</td></tr> </table> ※연계 법안: 법원조직법(제9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9호)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법원	인천광역시	전국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법원	인천광역시	전국															
2	안병길의원 <부산 서구동구> [2100467]	<table border="1"> <tr> <th>명칭</th><th>소재지</th><th>관할구역</th></tr> <tr> <td>해사법원</td><td>부산광역시</td><td>전국</td></tr> </table> ※연계 법안: 법원조직법(제465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66호)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법원	부산광역시	전국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법원	부산광역시	전국															
3	배준영의원 <인천 중구강화옹진> [2106309]	<table border="1"> <tr> <th>명칭</th><th>소재지</th><th>관할구역</th></tr> <tr> <td>해사법원</td><td>인천광역시</td><td>전국</td></tr> <tr> <td>부산지원</td><td>부산광역시</td><td>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td></tr> <tr> <td>광주지원</td><td>광주광역시</td><td>광주/전북/전남/제주</td></tr> </table> ※연계 법안: 법원조직법(제630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630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6308호), 중재법(제630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305호)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법원	인천광역시	전국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광주/전북/전남/제주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법원	인천광역시	전국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광주/전북/전남/제주															
4	이수진의의원 <비례> [2108121]	<table border="1"> <tr> <th>명칭</th><th>소재지</th><th>관할구역</th></tr> <tr> <td>해사국제상사법원</td><td>대법원 소재지</td><td>전국</td></tr> <tr> <td>인천지원</td><td>인천광역시</td><td>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td></tr> <tr> <td>부산지원</td><td>부산광역시</td><td>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td></tr> <tr> <td>광주지원</td><td>광주광역시</td><td>광주/전북/전남/제주</td></tr> </table> ※연계 법안: 법원조직법(제8118호), 민사소송법(제8120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812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8134호), 중재법(제8119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133호)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국제상사법원	대법원 소재지	전국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광주/전북/전남/제주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국제상사법원	대법원 소재지	전국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광주/전북/전남/제주															
5	장동혁의원 <충남 보령서천> [2118490]	<table border="1"> <tr> <th>명칭</th><th>소재지</th><th>관할구역</th></tr> <tr> <td>해사법원</td><td>세종특별자치시</td><td>전국</td></tr> </table> ※연계 법안: 없음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법원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법원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6	박재호의원 <부산 남구을> [2122074]	<table border="1"> <tr> <th>명칭</th><th>소재지</th><th>관할구역</th></tr> <tr> <td>해사전문법원</td><td>부산광역시</td><td>전국</td></tr> </table> ※연계 법안: 법원조직법(제22084호), 민사소송법(제22078호), 민사집행법(제2207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2207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22082호), 중재법(제22077호) 및 소액사건심판법(제22073호)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전문법원	부산광역시	전국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전문법원	부산광역시	전국															
7	박찬대의의원 <인천 연수갑> [2125123]	<table border="1"> <tr> <th>명칭</th><th>소재지</th><th>관할구역</th></tr> <tr> <td>해사국제상사법원</td><td>인천광역시</td><td>전국</td></tr> <tr> <td>부산지원</td><td>부산광역시</td><td>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td></tr> </table> ※연계 법안: 법원조직법(제25095호), 민사소송법(제2512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251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25128호), 중재법(제2512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5129호), 민사집행법(제25125호)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광역시	전국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광역시	전국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참고자료 2

비용추계 결과(곽규택의원안)

- 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을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6억 2,700만원, 2029년 34억 5,600만원 등 향후 5년간 170억 4,200만원 (연평균 34억 8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해사법원 설치 (안 [별표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3,627	3,254	3,318	3,387	3,456	17,042	3,408

주: 1. 해사법원 설치(안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해사법원의 판사 수 대비 공무원 비율이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원 대비 공무원 정원 비율과 같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해사법원 설치로 증원되는 공무원은 22명으로 가정하고 보수, 기관부담금 등은 부산고등법원 공무원의 직급 및 평균연봉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는 판사 및 공무원 정원을 합한 총 정원 90명(=판사 24명 + 공무원 66명)을 기준으로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추계에서는 해사법원을 재판부와 사무국이 있는 고등법원급 규모로 설치하고 판사 증원없이 2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와 사무실 임차료로 한정
-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해사법원에 현재 서울, 부산고등법원 등에 구성되어 있는 5개 해사전담재판부의 판사(24명)를 재배치하고, 판사 수 대비 공무원 수 비율을 고려하여 2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서 해사법원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에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해사법원 설치로 증원되는 공무원 22명에 대한 보수, 기관부담금 등은 부산고등법원 공무원의 직급 및 평균연봉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는 판사 및 공무원 정원을 합한 총 정원 90명(=판사 24명 + 공무원 66명)을 기준으로 추계함
- 개정안 부칙에서 법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